

2014년 2월 22일 경찰간부 시험 【형법】

응시번호 :

이름 :

담당 : 김원욱 교수

동영상 강의

인터넷 서점

http://exampolice.co.kr

[2014년 경찰간부 형법 기출 해설]

이번 경찰간부 형법 문제는 전반적으로 평이한 난이도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채용 시험에서는 출제될 가능성이 적은 지엽적인 부분들도 있으므로 이를 알려드립니다. 5번, 8번 등의 문제는 참고하는 정도로 보기 바랍니다..^^

[1] 정답 ③

- ① (O) 大判 1984. 12.11 84도2524
② (O) (大判 1986.12.23. 86도2256).
③ (X) 소를 흥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그가 들고 있던 가방으로 돈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 왼쪽 주머니를 스치면서 지나간 행위는 단지 피해자의 주의력을 흐트려 주머니속에 들은 금원을 절취하기 위한 예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써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④ (O) (大判 2009.9.24. 2009도5595).

[2] 정답 ④

- ㉠ (X)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된 경우, 임차인이 퇴거 후에도 냉장고에 관한 점유·관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냉장고를 통하여 전기를 계속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자기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일 뿐 타인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가 아니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大判 2008.7.10. 2008도3252).
㉡ (X) 예금통장은 예금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아니고 그 자체에 예금액 상당의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를 소지함으로써 예금채권의 행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권으로서 예금계약사실 뿐 아니라 예금액에 대한 증명기능이 있고 이러한 증명기능은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예금통장을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그 인출된 예금액에 대하여는 예금통장 자체의 예금액 증명기능이 상실되고 이에 따라 그 상실된 기능에 상응한 경제적 가치도 소모된다. 그렇다면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한 위와 같은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大判 2010.5.27. 2009도9008).

[3] 정답 ②

- * 옳지 않은 것은 ㉠ 1개이다.
㉠ (X) 피해자를 살해한 방에서 사망한 피해자 곁에 4시간 30분쯤 있다가 그곳 피해자의 자취방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가 소지하는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경우 피해자가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大判 1993.9.28. 93도2143).=>살인행위 완료 후 별도의 범위에 의하여 재물을 취거한 경우 사망한 자의 생전 점유가 계속된다고 보아 살인죄와 절도죄가 성립한다.
㉡ (O) (大判 1985.10.22. 85도1527).
㉢ (O) (大判 1996.7.12. 96도1108).
㉣ (O) (大判 1999.3.9. 99도242).

[4] 정답 ③

- ① (O) 大判 2009.12.10. 2008도5282.
② (O) (大判 1984.4.24. 84도195).
③ (X)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사기도박으로 도금을 편취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위 각 죄가 실제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경합범 가중을 한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大判 2011.01.13. 2010도9330)

- ④ (O) 大判 2009.2.26. 2008도10582.

[5] 정답 ④

- ① (O) (大判 1957.2.1. 4289형상317).
② (O) 형법 197조 참조
③ (O) (大判 1977.11.22. 77도103).
④ (X) 본건 사설특수가압수도시설은 피고인이 관계당국으로부터 그 명의의 설치허가를 받아 사제로써 시의 상수도관에다가 특수가압간선을 시설한 것으로서 그 시설에 의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가입한 후 시의 급수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자가 마음대로 단수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시설자인 피고인이 불법이용자에 대한 단수조치로서 급수관을 발굴절단하였다 하여도 수도불통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大判 1971.1.26. 70도2654).

[6] 정답 ①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면 그 즉시 제1심판결이 확정되고 상대방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위 항소를 취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大判 2002.11.22. 2000도4419)

[7] 정답 ①

- ㉠ (O) (大判 2013.09.12. 2013도5893)
㉡ (O) (大判 2009.12.10. 2009도7681).
㉢ (O) 大判 2008.12.11. 2008도3656.
㉣ (O) (大判 1999.05.14. 선고 99도826)

[8] 정답 ④

- ① (O) 大判 2003.12.26. 2003도3768.
② (O) (大判 2012.02.23. 2011도8124)
③ (O) 大判 2012.1.27. 2011도15914
④ (X) 선고유예가 주로 범정이 경미한 초범자에 대하여 형을 부과하지 않고 자발적인 개선과 갱생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인 점, 형법은 선고유예의 예외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전과를 범행 이전의 것으로 제한하거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규정상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에 의한 전과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면 나머지 죄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을 수 없을 것인데 나중에 별도로 판결이 선고된다는 이유만으로 선고유예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大判 2010.7.8. 2010도931).

[9] 정답 ④

- ㉠ (O) (大判 2005.10.28. 2005도5774)
㉡ (O) (大判 2007.5.11. 2007도2134).
㉢ (O) ㉣ (O) (大判 2006.11.23. 2006도6795)

[10] 정답 ②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

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 실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大判 1985.5.14. 84도2118)=> 편면적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11]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 ㉡ 1개이다.

㉠ (O) (大判 1990.3.27. 89도2036).

㉢ (O) (大判 1991.9.24. 91도1824).

㉤ (X)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약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약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한 사례(大判 2002.2.8. 2000도3245)

㉥ (O) (大判 1991.5.28. 91도80).

[12] 정답 ①

① (X)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62조 제6호의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大判 2007.6.14. 2007도2162).

② (O) (大判 2011.10.13. 2011도6287).

③ (O) 大判 1997.5.30. 97도597

④ (O) (大判 2004.4.23. 2004도1109).

[13] 정답 ④

㉠ (O) (大判 1984.12.11. 84도2347).

㉢ (X)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던 보행자 甲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甲과 동행하던 피해자 乙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위 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甲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야기되었고, 乙의 상해는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서 정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大判 2011.4.28. 2009도12671).

㉤ (O) (大判 1990.5.22. 90도580).

㉥ (O) 大判 2000.2.11. 99도9286

[14] 정답 ②

① (O) 大判 2006.2.24. 2005도7673. <주> 즉 영업주의 처벌은 종업원의 범죄 성립때문이 아니라,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태만의 자기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의미이다.(과실책임설)

② (X)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大判 1995.07.25. 95도391)

③ (O) 憲決 2000.6.1 99헌바73

④ (O) (大判 2000.10.27. 2000도3570).

[15] 정답 ①

① (X)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살인죄의 범의는 있었음이 분명하다(大判 1987.1.20. 86도2395).

② (O) (大判 2010.4.29. 2010도2328).

③ (O) ④ (O) (大判 2005.6.10. 2005도1373)

[16] 정답 ③

① (O) 大判 2007.6.29. 2005도3832.

② (O) 大判 1996.12.10. 96도2529

③ (X) 난소의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 아니라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라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大判 1993.7.27. 92도2345).

④ (O) (大判 2000.3.23. 99도3099).

[17] 정답 ①

① (X)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大判 2002.10.11. 2002도4315).

② (O) (大判 1985.6.25. 84도2083).

③ (O) 大判 2000.3.24. 2000도102

④ (O) (大判 1982.6.22. 82도705).

[18] 정답 ③

① (O) (大判 1986.7.22. 85도108).

② (O) (大判 1989.11.24. 89도1618).

③ (X)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인턴의 수가 부족하여 수혈의 경우 두 번째 이후의 혈액봉지는 인턴 대신 간호사가 교체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혈액봉지가 바뀔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함이 없이 간호사에게 혈액봉지의 교체를 일임한 것이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大判 1998.2.27. 97도2812).

④ (O) (大判 2009.5.28. 2009도1040).

[19] 정답 ③

① (O) 大判 1995.3.10. 94도2422

② (O) (大判 1998.3.10. 98도70).

③ (X)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大判 2007.9.28. 2007도606 전합).

④ (O) (大判 1998.3.10. 98도70).

[20] 정답 ④

① (O) (大判 1984.4.24. 84도372).

② (O) 大判 2000.7.28. 2000도2466

③ (O) 大判 1984.05.15. 84도488

④ (X)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 실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大判 1985.5.14. 84도2118). 일방의 공동가공의사가 있더라도 편면적공동정범은 성립되지 않고, 동시범의 특례를 규정한 형법 제263조가 적용된다.

[21] 정답 ②

㉠ (X)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大判 2001.8.24. 2001도2832).

㉢ (X)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액에 자의로 합의된 금액의 한도를 엄청나게 넘는 금액을 기입하는 것은 백지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서명날인 있는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한 새로운 약속어음의 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소위가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大判 1972.6.13. 72도897).

㉤ (O) (大判 2006.1.25. 2005도4764).

㉥ (O) (大判 1978.11.14. 78도1904).

[22] 정답 ③

① (O) (大判 2006.9.28. 2006도1545).

② (O) (大判 2000.6.13. 2000도778).

③ (X)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 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大判 1987.7.20. 87도564).

④ (O) (大判 1997.3.28. 96도3191). ⇨ 위임법위를 초월하거나 위임의 본지에 반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위조가 된다.

[23] 정답 ③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 4개이다.

㉠ (O) (大判 1990.10.16. 90도1199).

㉢ (O) (大判 1983.12.13. 83도1458).

㉤ (O) (大判 1973.10.23. 73도395)

㉥ (O) (大判 1972.5.9. 72도722).

㉦ (X) 형법 제227조가 규정한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 공무원 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작성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결재도 받

지 아니하고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권한자 명의로 작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면사무소 호적계장이 면장의 결재 없이 호적의 출생년란, 주민등록번호란에 허위내용의 호적정정 기재를 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구성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227조가 규정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는 없다(大判 1990.10.12. 90도1790).

[24] 정답 ①

- ① (X)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大判 2008.2.14. 2007도10034).
- ② (O) (서울고등법원 1988.04.08. 88노351)
- ③ (O) (大判 2007.3.15. 2006도8929).
- ④ (O) (大判 2002.9.24. 2002도3589).

[25] 정답 ②

- ① (O) 大判 2009.10.15. 2009도7421
- ② (X) 타인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의 경우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 ③ (O) (大判 2002.3.26. 2001도6641).
- ④ (O) (大判 1983.1.18. 82도2341 등).

[26] 정답 ③

- ㉠ (O) (大判 2011.4.28. 2010도15350).
- ㉡ (X) [1] 피해자가 본범의 기망행위에 속아 현금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면, 이는 재물에 해당하는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이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은 당초 발생하지 않는다. [2]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의 명의로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갑에게 이를 양도함으로써 갑이 을을 속여 을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한 사기 범행을 방조한 피고인이 위 계좌로 송금된 돈 중 140만 원을 인출하여 갑이 편취한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갑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것은 재산상 이익이어서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단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大判 2010.12.09. 2010도6256)
- ㉢ (X)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처분한 행위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의 가벌적 평가에 포함되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大判 2004.5.9. 2003도8219).
- ㉣ (O) (大判 1986.9.9. 86도1273).

[27] 정답 ②

- ① (O) (大判 2011.1.13. 2010도9330).
- ② (X) 상습도박의 죄나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도박을 반복해서 거듭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인바,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의 죄에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하여야 한다(大判 1984.4.24. 84도195).
- ③ (O) (大判 2008.10.22. 2008도3970).
- ④ (O) (大判 2011.1.13. 2010도9330).

[28] 정답 ④

- ㉠ (X)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위 동업관계가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종료되고 피고인이 동업관계의 종료로 부동산중개업을 그만두기로 한 경우, 피해자의 중개업은 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大判 2007.1.12. 2006도6599).
- ㉡ (O)(大判 1996.5.10. 96도419).
- ㉢ (X)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초등학교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헌법 제31조가 정하고 있는 무상으로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 및 초·중등교육법 제12, 13조가 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교육 실시의무와 부모들의 취학의무 등에 기하여 학생들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거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大判 2013.06.14. 2013도3829)

- ㉣ (X)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공무원의 기자회견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大判 2011.7.28. 2009도11104).
- ㉥ (X)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大判 2004.10.28. 2004도1256).

[29] 정답 ①

- ① (O)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大判 1993.10.12. 93도1851).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 ② (X)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大判 1997.6.13. 97도957). 장애미수로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 ③ (X) 이 사건 농약의 치사추정량이 쥐에 대한 것을 인체에 대하여 추정하는 극히 일반적 추상적인 것이어서 마시는 사람의 연령, 체질, 영양 기타의 신체의 상황여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요구르트 한 병마다 섞은 농약 1.6씨씨가 그 치사량에 약간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를 마시는 경우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大判 1984.2.28. 83도3331). 불능미수로서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 ④ (X) 자수의 경우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30] 정답 ①

- ① (X) 구청 공무원이 유흥주점의 업주에게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하여 세금이나 영업허가 등에 관하여 문제가 생기면 다른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주겠다’면서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요구한 경우, 그 뇌물요구의 명목이 상대방의 막연한 기대감을 전제로 한 것이고 당시 알선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거나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한다(大判 2009.7.23. 2009도3924).
- ② (O)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한다(大判 2009.7.23. 2009도3924).
- ③ (O) 大判 2012.1.12. 2011도12642
- ④ (O) (大判 2012.11.15. 2012도9417).

[31] 정답 ①

- ① (X)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관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관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관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관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大判 1999.9.17. 97도3349).
- ② (O) ③ (O)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의 개념설명으로 옳은 지문이다.
- ④ (O) (大判 2009.4.23. 2008도11017). ▶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명확성원칙에는 위배되지 않으나,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된다.

[32] 정답 ③

- ① (O) (大判 2011.8.25. 2011도6507).
- ② (O) 大判 2004.4.23. 2002도2518.
- ③ (X)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 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형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大判 2000.4.21. 99도3403).
- ④ (O) (大判 1998.11.27. 98도2734).

[33] 정답 ①

*시장인 피고인 甲이 자신의 인사관리업무를 보좌하는 행정과장 피고인 乙과 공동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가 작성되고 이에 따라 평정순위가 정해졌는데도 평정권자나 실무담당자 등에게 특정 공무원들에 대한 평정순위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새로 작성하도록 한 사안에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

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평정권자나 확인권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의 인사관리업무를 보좌하는 자에게는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작성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특정 공무원에 대한 평정순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작성하게 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평정권자나 실무 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大判 2012.1.27. 2010도11884).

[34] 정답 ②

- ① (O) (大判 2007.7.26. 2007도4404).
- ② (X)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제1범죄행위로 서버컴퓨터가 압수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동종의 제2범죄행위를 하고 제2범죄행위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 피고인에게 범의의 갱신이 있어 제1범죄행위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제2범죄행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大判 2005.9.30. 2005도4051).
- ③ (O) (大判 2007.3.15. 2006도9042.).
- ④ (O) 大判 2004.9.16. 2001도3206 전합.

[35] 정답 ②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 2개이다.

- ㉠ (O) (大判 2009.10.15. 2009도5655).
- ㉡ (X)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당일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고 그 후에도 같은 일을 하였으며 융통한 자금을 甲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담보 제공 등의 행위가 피고인이 위임야를 甲에게 반환할 의무를 현실적으로 부담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하여진 이상 달라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大判 2011.4.28. 2011도3247).
- ㉢ (O) (大判 2012.12.27. 2012도10822)
- ㉣ (X)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그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그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大判 2008.8.21. 2008도3651). ▶ 동산의 양도담보설정과 달리, 자동차의 저당권설정은 자동차 등록부에 공시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더라도 채권자가 자동차에 대하여 담보권(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따라서 저당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6] 정답 ①

- ① (X) 297조의 2[유사공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경우에만 유사공간죄가 성립한다.
- ② (O) 강간살인과 강간치사의 경우 형량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형법 301조의 2), 형법 301조(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 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에 의하면 강간치상죄와 강간상해죄는 형량이 동일하다.
- ③ (O) 형법 300조 참조
- ④ (O) 305조의2(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7] 정답 ③

- ① (O) 음란성의 존부는 작성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도서 자체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大判 1991.9.10. 91도1550).
- ② (O) (大判 1995.6.16. 94도2413).
- ③ (X)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경우,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인식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大判 2000.12.22. 2000도4372).
- ④ (O) 大判 2000.12.22. 2000도4372

[38] 정답 ②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된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이 때에 그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에 규정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大判 2006.3.24. 2005도3516).

[39] 정답 ②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 1개이다.

- ㉠ (X) [1]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을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 민법 제769조에서 인척으로 규정하였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大判 2011.4.28. 2011도2170).
- ㉡ (X) 친척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한 자가 그 친척 거래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예금통장을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친척명의 계좌의 예금잔고를 자신이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자기 계좌로 이체한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종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 친척 거래 금융기관이라 할 것이고 거래 약관의 면책 조항이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법리 적용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최종적으로는 예금명의인인 친척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하여 자금이체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이중지급 위험의 원칙적인 부담자인 거래 금융기관을 위와 같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친족 사이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大判 2007.3.15. 2006도2704).
- ㉢ (O)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법 제860조에 의하여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大判 1997.1.24. 96도1731).
- ㉣ (X)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형법 328조 3항)

[40] 정답 ③

- ① (O) (大判 2005.10.13. 2005도5396).
- ② (O) (大判 2011.8.25. 2011도7725).
- ③ (X)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신용카드'처럼 실물 형태의 '증표'가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구매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카드번호만이 부여될 뿐이며, 거래방법도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제시'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구매기업이 카드회사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매 사실을 통보하면 카드회사가 판매기업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온라인거래 수단을 지칭하는 데 지나지 않는 점, 구매기업은 카드회사와 가맹점가입계약을 체결한 모든 판매기업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매기업이 지정한 특정한 판매기업과 사이에서만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판매기업을 일반 신용카드거래의 가맹점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거래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大判 2013.07.25. 2011도14687)
- ④ (O) (大判 2012.1.27. 2010도8336).